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서식

2026.03.

□ 신청시 제출 서류(서식 2 이후의 양식을 개별 페이지를 활용하여 작성)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기반조성) * 제출 시 K-PASS 내 '사업계획서'탭에 업로드하여 제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제출 시 KPASS 내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탭에 서식3, 4를 묶어 한 파일로 제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서식5) 지방자치단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필수	지방자치단체
6	(서식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서식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서식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제출시 유의 사항

- ☞ 반드시 아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가능
- ☞ 신청자(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본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내 작성요령, [참고1], [참고2]은 삭제 후 제출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 6) 컨소시엄 기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19.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접수번호 기입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기반조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 단계	1 연차	목표	
			내용	
		2 연차	목표	
			내용	
		3 연차	목표	
			내용	
		4 연차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총괄) >

구분	성과지표 (단위)	비중	연차별 목표					성과증빙
			1차	2차	3차	4차	합계	
전용공간 확보								
장비구축 및 활용								
합계		100						

※ 필수지표를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

※ 지표별 비중 합계가 100이 되도록 작성

< 성과지표명 및 지표정의 >

성과지표명	지표정의	비고
장비구축건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축장비 검증시험완료건수 하기 제과정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장비선정→내부 장비심의위→중앙장비심의위→구매의뢰→구매계약→통관, 운송, 입고→검수 및 설치 * 장비구매단가 및 과제별 추진환경에 따라 일부 프로세스 조정 가능 * 단계별 증빙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최종완료의 증빙은 성능검증결과서를 제시 산식 : Σ (장비구축완료 건수) 	필수
장비가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신규 구축 장비의 연간 가동률 측정 (측정산식) Σ (시설장비별 가동률*) / Σ (가동률 계산 시설장비 수) * 각 시설장비별 가동시간/가용시간 (측정기준) 3천만원 이상 신규로 구축된 시설장비 평균 가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 가용시간(1년 기준) = 주5일 × 50주 × 8시간 = 2,000시간 - i-tube 시스템 등록한 장비별 가동실적을 통해 가동률 산출 * (예식) 가동률 A장비 20%, B장비 30%, C장비 70%인 경우 : $(20\% + 30\% + 70\%) / 3$개 장비 = 40% 	필수
기술지원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시설장비 및 SW를 활용한 수혜기관 등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을 진행한 건 수 (측정산식) Σ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건 수) (측정기준) 시설장비 및 SW를 통한 기술지원 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전화, 이메일 등 1회성 질의에 대한 단순 응대는 제외 	필수
장비 이용기업(기관)수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신규 구축 장비 이용 기업(기관) 수 측정 (측정산식) Σ (시설장비별 이용 기업(기관) 수) / Σ (가동률 계산 시설장비 수) (측정기준) 3천만원 이상 신규로 구축된 시설장비 별 이용 기업(기관) 수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기업(기관)이 1개 장비를 여러번 나눠서 이용한 경우는 1개로 산정(중복 제거) * A기업 : a장비 1회, a장비 2회, a장비 3회 => 1회 이용 - 동일기업(기관)이 여러개 장비를 이용한 경우는 이용실적에 모두 포함 * A기업 : a장비 2회, b장비 1회, c장비 3회 => 3회 이용 - i-tube 시스템 등록한 장비별 가동실적을 통해 가동률 산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 성과지표 중 선택 지표에 대한 지표정의 작성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I . 수행계획	0
1. 과제 개요	0
1) 산업(기술) 개요	0
2) 국내·외 산업동향	0
3) 인프라 구축현황	0
4) 수요 분석	0
2. 과제 필요성	0
1) 기반구축사업 SWOT 분석	0
2) 정부지원 필요성	0
3) 산업 연계효과	0
4) 사업추진 역량	0
3. 과제 목표 및 내용	0
1) 최종 목표	0
2)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	0
3)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0
4) 추진내용	0
5) 수행일정	0
4. 과제 추진전략 · 방법 및 추진체계	0
1) 추진전략 · 방법	0
2) 추진체계	0
3) 기반구축 정부사업과의 연계 방안	0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0
1) 성과 활용방안	0
2) 기대 효과	0
3) 자원조달 및 자립화 전략	0

목 차

6.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0
1) 안전관리 이행계획	0
II. 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0
1. 연구개발기관 현황	0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0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0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0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0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0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0
2) 연구개발비 총괄 사용계획	0
3)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주관 : ○○○○○]	0
4)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공동 : ○○○○○]	0
5)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공동 : ○○○○○]	0
붙임.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0

I. 수행계획

1. 과제개요

1) 산업(기술) 개요

가. 정의 및 범위

나. 특성

다. 비전-발전방향-국가연구개발 정책과의 연관성

- 비전
- 발전방향
- 관련 산업 및 기술
- 국가 산업정책과의 연관성
- 중요성

■ 수행과제의 정의 및 범위, 특성, 전후방산업 연관성 등 개요 기재

2) 국내·외 산업동향

가. 시장동향

나. 기술동향

다. 기업동향

■ 국내외 시장동향, 기술동향, 기업동향(공급사슬 변화 등) 기재

3) 인프라 구축현황

가.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기관명 (소재지)	기술분야	구축장비 및 서비스 제공 분야	비고 (차별화 또는 연계방안 등)
000연구원 (경남)			

나. 해외 인프라 구축 현황

기관명 (소재지)	기술분야	구축장비 및 서비스 제공 분야	비고 (차별화 또는 연계방안 등)
000연구원 (미국)			

- 출연연, 연구기관, 지역혁신센터 및 지역특화센터 등을 포함한 국내 유사 인프라 구축기관과 해외 유사 인프라 구축기관의 현황을 작성

4) 수요분석

가. 수요기업 현황분석

NO	기업명	업종	주요업무	매출액 (억원)	고용현황 (명)	부설 연구소 (○, X)	지역
1							
2							
3							
4							
5							
...							
합계							

나. 수요기업 협력방안

NO	기업명	기업 지원 세부추진내용	협력방안								
			장비 활용	공동 연구	기술 지도	교육 연계	창업 지원	기술 이전	기술 상당	정보 제공	기타
1											
2											
3											
4											
5											
...											
합계											

- 과제수행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현황 기재
- 협력방안 세부항목을 중복하여 “V” 표기

2. 과제 필요성

1) 기반구축사업 SWOT 분석

		강점(S)	약점(W)
		-	
기회 (O)		(SO전략)	(WO전략)
위협 (T)		(ST전략)	(WT전략)

- 국내외 관련 인프라 현황분석 등 중심으로 기술·기반구축 관점에서 서술

2) 정부지원 필요성

가. 자체해결 한계점

나. 정부지원을 통한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 해당 사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의 필요성 기재
- 자체해결 한계점은 구축예정 인프라에 대한 수요에 대해 서술
- 정부지원 기대효과는 기업성장 및 고용창출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서술

3) 산업 연계효과

가. 산업·기업 연계효과

나. 지역(전략)산업 연계(해당 시)

- 본 과제 수행을 통한 기존 산업·기업성장 연계효과 기재

4) 사업추진 역량

가. 주요 사업추진 실적

기관명	사업내용 및 활용현황	연도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 내용 : ○ 활용현황 : 		

■ 연구개발기관의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기재 및 본 사업 기여효과를 서술

나. 인적 현황

다. 보유 인프라 현황

■ 동 과제와 연관된 센터 및 장비구축 현황, 입주기업 현황 등을 서술

3. 과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서술)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

가. 과제목표

- ~~~~~~(과제제안요청서(RFP)의 과제목표를 최대한 준용할 것)

나. 주관연구기관 역할 및 목표

- ~~~~~~

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 및 목표

- ~~~~~~

■ 과제의 최종 목표 및 성과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주체별 역할 및 명확한 목표설정 필요

< 최종목표 및 수행내용(요약) >

구분	연구개발기관	최종목표	비중	수행내용
장비구축건수 (건)		0 -		0 -
		0 -		0 -
장비가동률(%)		0 -		0 -
		0 -		0 -
기술지원 건수		0 -		0 -
		0 -		0 -
장비 이용기업(기관) 수 (개)		0 -	-	0 -
		0 -	-	0 -
		0 -	-	0 -
		0 -	-	0 -
		0 -		0 -
		0 -		0 -
합계	-		100	-

2)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

가.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총괄)

구분	성과지표 (단위)	비중	연차별 목표					비고
			1차	2차	3차	4차	합계	
장비구축건수(건)								
장비가동률(%)								
	합계	100						

- ※ 필수지표를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
 ※ 지표별 비중 합계가 100이 되도록 작성

< 성과지표명 및 지표정의 >

성과지표명	지표정의	비고
장비구축건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축장비 검증시험완료건수 하기 제과정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장비선정→내부 장비심의위→중앙장비심의위→구매의뢰→구매계약→통관, 운송, 입고→검수 및 설치 * 장비구매단가 및 과제별 추진환경에 따라 일부 프로세스 조정 가능 * 단계별 증빙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최종완료의 증빙은 성능검증결과서를 제시 산식 : Σ (장비구축완료 건수) 	필수
장비가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신규 구축 장비의 연간 가동률 측정 (측정산식) Σ (시설장비별 가동률*) / Σ (가동률 계산 시설장비 수) * 각 시설장비별 가동시간/가용시간 (측정기준) 3천만원 이상 신규로 구축된 시설장비 평균 가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 가용시간(1년 기준) = 주5일 × 50주 × 8시간 = 2,000시간 - i-tube 시스템 등록된 장비별 가동실적을 통해 가동률 산출 * (예식) 가동률 A장비 20%, B장비 30%, C장비 70%인 경우 : $(20\% + 30\% + 70\%) / 3$개 장비 = 40% 	필수
기술지원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시설장비 및 SW를 활용한 수혜기관 등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을 진행한 건 수 (측정산식) Σ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건 수) (측정기준) 시설장비 및 SW를 통한 기술지원 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전화, 이메일 등 1회성 질의에 대한 단순 응대는 제외 	필수
장비 이용기업(기관)수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신규 구축 장비 이용 기업(기관) 수 측정 (측정산식) Σ (시설장비별 이용 기업(기관) 수) / Σ (가동률 계산 시설장비 수) (측정기준) 3천만원 이상 신규로 구축된 시설장비 별 이용 기업(기관) 수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기업(기관)이 1개 장비를 여러번 나눠서 이용한 경우는 1개로 산정(중복 제거) * A기업 : a장비 1회, a장비 2회, a장비 3회 => 1회 이용 - 동일기업(기관)이 여러개 장비를 이용한 경우는 이용실적에 모두 포함 * A기업 : a장비 2회, b장비 1회, c장비 3회 => 3회 이용 - i-tube 시스템 등록된 장비별 가동실적을 통해 가동률 산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 ※ 성과지표 중 선택 지표에 대한 지표정의 작성

나.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기관	구분	성과지표 (단위)	연차별 목표					비고
			1차	2차	3차	4차	합계	
	장비구축건수							
	장비가동률%							

3)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가. 성과지표 설정근거

■ 과제 특성에 따라 기반구축 목표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성과지표 설정근거를 제시

나. 성과지표 목표 및 설정근거

성과지표	목표 및 산출근거			
	성과지표 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및 방법	성과증빙
장비구축건수	◦ (예시) ○○○장비 등 00종 구축	◦ (예시) 해당 장비의 필요성 및 수량 산출 근거(수요조사 자료 제시 등)		장비별 i-tube 등록증
장비가동률	◦ (예시) 최종 장비가동률 00% 이상 - 1차년 : 00% - 2차년 : 00% - 3차년 : 00%	◦(예시) 00 장비의 특성상 과제 수행 기간 내 00%가 최적의 목표인 근거	◦ 측정산식 : $\{ \sum(\text{연간 시설장비 가동시간} / \text{시설장비 가용시간}) \} / \sum(\text{가동률 계산 장비})$ ◦ 측정대상 : 구축 또는 개선한 시설장비 ◦ 측정방법 : 장비별 사용일지 전수조사	장비별 사용일지
	◦	◦		
	◦	◦		

4) 추진 내용

가. 주요내용(서술)

- ~~~~~~(과제제안요청서(RFP)의 과제내용을 최대한 준용할 것)

■ 비전, 목표, 전략 등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내용을 서술하고, 필요에 따라 도식화하여 작성

나. 상세추진계획

- ~~~~~~(과제제안요청서(RFP)의 과제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작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내용, 운영위원회 및 자체 장비도입심의회 운영계획 등 상세기재

다. 연차별 중점 추진내용

(단위: 천원)

구분		지표	주요 내용	주요 수행내용별 예산 사업비
1단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중점 추진내용을 상세히 기재
- 예산사업비는 출연금(국비)과 지방비+민자를 합하여 기재

5) 수행일정

가. 1단계 1년차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장비구축						
기업지원						

나. 1단계 2년차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장비구축						
기업지원						

다. 1단계 3년차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장비구축						
기업지원						

라. 1단계 4년차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장비구축						
기업지원						

■ 과제 수행일정은 연도별 추진 내용과 부합되게 구체적으로 기재

4. 과제 추진전략 · 방법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 · 방법

가. 기반구축 추진전략 및 로드맵

- 장비구축 방향 및 연차별 구축전략 포함하여 서술(건축, 인증획득 등 지원체계 포함)
- 전문 기반·기술 확보, 특화전략, 전담인력 확보계획 및 확보방안, 전용공간 확보전략 등 상세 작성

<로드맵 예시(제출시 삭제)>



나. 시설·장비 도입 및 활용 계획

(1) 기반구축 사업 상세내용

○ 수행내용 (건축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행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
- 연관 성과지표명 :

○ 수행내용 (장비구축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행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
- 연관 성과지표명 :

(2)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1조에 따라 구성 필요

순번	구분	성명	직위	소속	비고
1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당연직
2	참여기관책임자				당연직
3	학계, 연구계, 산업계				선임직
4	주관기관				운영간사

(3) 장비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순번	구분	성명	직위	소속	비고
1					
2					
3					

※ 운영위원회는 과제의 방향설정, 변경검토,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 해당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심의대상 장비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연차별 구축장비 목록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3천만원 이상 필수 작성)

(단위: 천원/대)

구분		국문 장비명 (영문 장비명)	모델명	주요 사양	제작 국가	제작 회사	단가 (A)	수량 (B)	예상 가격 (C=A*B)	구축 방식	구입 예정 연월	현금 / 현물	
1 단 계	1 차 년 도									구매			
										개발			
		소 계											
	2 차 년 도												
		소 계											
	3 차 년 도												
		소 계											
	4 차 년 도												
		소 계											
	합 계												

- 구축방식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사항 기재
- 구축장비는 붙임1. 시설장비 개요 및 활용계획 필수 작성
- 장비사양 및 단가변동은 협약변경 사항(필요시 도입 재심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과제수행을 위해 장비구입비 등은 최신 자료(견적서 등)를 확인하여 계상
- 시설장비는 구매 및 심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의거하여 심의·승인·구매 등을 통하여 구축
-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시 아래 요령 및 표준지침을 따라야 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의거하여 3천만원 이상(도입가기준) 1억원미만(국비기준) 장비는 전문기관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 비R&D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이상(국비기준) 장비는 장비전담기관의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 관련 상기 심의 결과 가결(승인)된 장비 구매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함, 다만 정보시스템 구매 시 정보보안 지침 등 관련 규정의 구매절차 준수사항을 따름
 -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0조(구매원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6조(구매원칙)

(2) 연구시설·장비 주요 사용 용도(3천만원 이상 필수 작성)

구분	연구시설·장비명	주요 용도	장비 전담인력	설치장소
1 단 계	1차 년도	■	000 선임	
		■		
		■		
	2차 년도	■		
		■		
		■		
	3차 년도			
	4차 년도			

(3)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계획

(단위: 천원/명)

연구개발 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구분 (기존/신규)	운영기간	비용		활용계획
				연간 운영비	과제 반영비	
			yy-yy			
			yy-yy			

(4) 후보장비 목록

(단위: 천원)

연구개발 기관명	국문 장비명 (영문 장비명)	모델명	주요 사양	제작 국가	제작 회사	단가 (A)	수량 (B)	예상 가격 (C=A*B)	주요 용도	설치 장소 (세부)
합 계										

- 사업수행 중 장비심의 시 단가 조정, 구축장비의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차액 발생 시 우선적으로 구축할 장비 목록 기재
 - 실제 차액이 발생하여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상기 목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담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승인) 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계획 변경 후 집행 가능
 - 전담기관 담당자는 사전 협의(승인)요청 시 협약기간 내 구축 계획(지출원인행위, 구입예정연월) 등을 검토 예정

라. 경쟁력 확보전략

(1) 전문 기반(기술) 확보 및 전문분야 특화 전략

- 과제수행을 통해 파생되는 전문 기반.기술 확보 및 전문분야 특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서술

(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 전담인력확보 계획은 활용목적이 분명하고, 확보전략[역할(장비운영, 기술서비스 등), 자격조건(학력, 전공분야, 경력 등), 확보시기] 등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내용을 기재

(3) 전용공간 확보 전략 (주관/참여 수행기관별 별도 작성)

- 위치(주소) :
- 규모 : 부지면적 m^2 , 건축연면적 m^2
- 용도 :

- 전용공간의 면적, 위치, 구조를 상세히 기재하고, 구축추진 일정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실현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 후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서술

2) 추진체계



■ 컨소시엄 구성 및 기관별 역할 분담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도식 수정 가능)

3) 기반구축 정부사업과의 연계 방안

사업명	연구시설·장비명	주요 용도	장비위치	연계방안
A사업	A장비	■	A도 A시	■

가. A사업<하기 표는 제목줄을 유지, 좌우상하 간격은 변경가능>

사업명	주무부처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장비위치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	주요장비
A사업							

○ 세부내용 작성

나. B사업(하위 양식은 상동)

■ 연구시설·장비 및 연계방안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성과 활용방안

■ 과제 수행으로 예상되는 성과,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재

2) 기대효과

■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

3) 자원조달 및 자립화 전략

가. 자원조달 전략 및 계획(성과활용기간 포함)

■ 연도별, 세부 기반구축 수행내용별 계획에 의거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나. 연도별 예상/발생 수익금

구분	연차	수익 발생원	예상/발생 수익금(천원)	추정 근거/발생내역
1단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다. 성과활용기간 예상/발생 수익금

구분	연차	수익 발생원	예상/발생 수익금(천원)	추정 근거/발생내역
성과 활용 기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 수익발생원은 장비활용수익, 전용공간 임차수익, 시험평가인증 수익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단, 그 수익이 동 사업에 사용가능한 수익원이어야 함
 - 정부예산은 수익에 산정할 수 없음 (ex: 구축된 장비와 연계하여 수주된 정부사업비)
 - 장비사용 수수료 등의 수익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 기재
 - 연도별 예상발생 수익금은 성과활용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 추정근거는 예측 가능한 수요 규모, 서비스제공단가 등을 명시할 것
- ex> 10건/연 × 500,000원 = 5,000,000원

6.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1) 안전관리 이행계획

가.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 과제 수행기간 동안의 안전책임자를 지정

번호	구분	소속 기관	성명	직급 ¹⁾	생년 월일 (YYMMDD)	성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1	주관	○○ 연구원	홍길동	책임	610101	남	○○대	1900	안전공학	박사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 안전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제정일자, 운영방법 기재하고 없는 경우 제정 계획 등 기재

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간접비로만 편성해야 함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및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로서 인건비(미지급액 포함) 총액의 1~2%를 예산으로 반영해야 함 (출처: 연구실안전관리법)
 - 대학, 대학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이하
 - 기업부설연구소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인건비 총액의 2% 이하
- 예: 방진복, 안전모, 방진장갑, 폐액 등

라. 안전사고발생시 보고 및 조치

-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 절차 및 체계도 작성

마.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 절차 및 체계도 작성

바. 안전교육 실시 등

- 과제 수행기간동안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기간별(일, 주, 월, 분기 등)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상세히 작성

구분	교육 제목	교육대상	교육 내용 상세	수행 일시
1차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신규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 이해 ○ 연구실 안전법 주요 내용 및 개정 안내 	분기별 1회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보수교육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II. 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2)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3)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4)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종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5)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 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6)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7)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 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1)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2)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3)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4)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종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당시 소속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5)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6)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7)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다.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 (1) 참여연구자 현황 ※ 전체 참여연구자(연구개발기관책임자, 학생연구자포함)에 대해 작성하며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은 등록이 불가함

번호	소속 기관 (역할)	신규/ 기존/ 외부	성명 (국적)	직위	생년월일 (성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참여 기간 (년/월)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 (%) (A)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인건비 계상률 (%) (B)	전체 인건비 계상률 합계 (A+B, %)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과제 수 (3책/5공)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	00연구원 (주관)	기존	김OO (한국)	팀장	'86.12.02 (남)	박사	전자 공학	'12	책임	'22.4~24.12	30%	70%	100%	3 (3/3)
2		기존	박OO (한국)	책임	'81.03.02 (여)	박사	컴퓨터 과학	'08	실무책임	'22.9~24.12	50%	-	50%	1 (0/1)
3	00대학교 (공동)	기존	이OO (한국)	수석	'75.03.02 (남)	학사	기계 공학	'95	공동책임	'22.4~22.12	50%	-	50%	1 (0/1)
										'23.1~24.12	100%	-	100%	1 (0/1)
4	00연구원 (공동)	기존	기OO (한국)	선임	'86.03.02 (남)	박사	에너지 공학	'12	공동책임	'22.4~24.12	30%	-	30%	1 (0/1)
5		신규	임OO (한국)	선임	'86.03.07 (남)	박사	에너지 공학	'12	실무	'21.4~24.12	30%	-	30%	1 (0/1)
6	00대학교 (공동)	기존	이OO (한국)	박사 과정	'88.07.02 (여)	석사	화학 공학	'20	공동책임	'22.4~24.12	20%	40%	60%	3 (2/3)

(2) 참여연구원 역할

번호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급	참여 비중(%)						상세 역할
					플랫폼	장비	기술	인력	기타	계	
1	주관	○○기술연구원	홍길동	책임	70	20	0	0	10	100	- 사업 총괄
2		○○기술연구원			10	60	30	0	0	100	- 000시험분석 000 등 장비 운용 관리
3		○○기술연구원			10	30	60	0	0	100	- 운영위원회 및 장비도입심의회 운영
4	공동	○○대학교									
5		○○대학교									
...											

(3)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단계				
										1년	2년	3년	4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등 참조

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1)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2)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

가.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 실적)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 실적)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 실적)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 실적)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 ¹⁾	사업화 형태 ²⁾	지역 ³⁾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단위: 천원)

[illegible]

- 본 과제와 관련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기재
- 현물의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함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구분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기관명 (주관/공동/위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합 계		
		현금	%	현금	현물	소계	%	현금	현물	소계	%	현금	현물	합계
1단계 1년차														
	소계													
1단계 2년차														
	소계													
1단계 3년차														
	소계													
1단계 4년차														
	소계													
총계														

2) 연구개발비 총괄 사용계획

가.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나.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1단계 1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2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3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4년차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다.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1단계 1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2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3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4년차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2)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일반 ¹⁾	특례 ²⁾									
1단계 1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2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3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4년차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참여연구원 및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수혜학생 기재)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라) 수혜학생은 담당역할에 “수혜학생”으로 기재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정인력 및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수혜학생(행정조교 등)에 대해 기재)

-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공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공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라. 건축비 및 장비비 총괄

- “(1) 건축비 총괄의 합계+(2) 장비구축비 총괄의 합계 + (3) 장비운영비 총괄의 합계”의 총합이 총사업비와 일치해야 함

(1) 건축비 총괄

○ 건축비(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금	현물	계
건축비				
전용공간(부지매입 등)				
합 계(A)				
민간부담금 내역	지자체 민간부담금			
	지자체 외 민간부담금			
	합 계(A)			

- 건축비 일체(전용공간 포함)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만 구성되어야 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불가)
 - 기간내 신규 구입의 경우 현금으로 산정
 -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이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
 - 사업비요령 제17조에 따라 현물의 부당.과소 집행의 경우 정산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담 내역의 근거를 확인하여 산정 (예 : 설계비 현물 계상 X, 설계비 현금 O)

○ 기관별 건축비

(단위 : 천원)

비 목	1연차 (202X년)	2연차 (202X년)	3연차 (202X년)	4연차 (202X년)	계
지자체	517,876	6,509,000	-		
	설계비	공정 작성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1					
합계					

(2) 장비구축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				
사업참여인력 인건비				
합 계				
부담 내역	지방자치단체 지원금(a)			
	기관부담 연구개발비(b)			
	정부지원 연구개발비(c)			
	합 계(d=a+b+c)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 = ((a+b)/d)				

■ 장비운영비 중 민간부담금(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포함)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3) 장비운영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등)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				
장비운영·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				
합 계				
부담 내역	지방자치단체 지원금(a)			
	기관부담 연구개발비(b)			
	정부지원 연구개발비(c)			
	합 계(d=a+b+c)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 = ((a+b)/d)				

■ 장비운영비 중 민간부담금(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포함)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4) 현물출연 (기자재/시설/장비) 내역

(단위 : 천원)

No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내용연수 (만료년월)	구입금액	산정가액 (20%이내)	현물반영 해당연차
1	클린벤치	16.08	26.07	10,000	2,000	1차년도
2	호모믹서장비	17.08	27.07			1~3차년도
3						
4						
합 계						

- 본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시설장비만 현물 산정
-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
-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인 것
- 타사업으로 구입한 장비일 경우 해당사업 총 수행기간을 경과(종료)한 것

3)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 :)

가. 1단계 1년차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 총액	참여 기간 (월)	인건비 계상률 (%)	합 계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예시)	책임	50,000	12	10	5,000		5,000
		(예시)	선임	30,000	12	15	4,500		4,500
	신규 인력	(예시)	연구원	25,000	9	50	9,375		9,375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연구지원인력									
	소 계								
합 계									

- 인건비 계상률은 10%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됨
- 내.외부 및 연구지원인력 구분
 - 내부 :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말하며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외부 :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프리랜서, 타교학생(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구분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고 외부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로 계상), 실습연구원 등
 - 연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 기준
 -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 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2)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단위 : 천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석통합과정	석·박통합과정	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현금)
박사후 과정	(예시)	3,000			
박사과정	(예시)	2,500			
석사과정	(예시)	1,800			
학사이하	(예시)	1,000			
총 액					

(3) 연구시설 장비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합 계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시설. 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 장비 임차비						
	연구시설. 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건축비 포함)						
합 계							

(4) 연구재료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현물)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5)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연구활동비					
합 계					

(6)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직접비의 xx%)				
합계				

※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계상비율과 총액만 기재 (세부내역 미기재)

(7) 용역 내역서 (해당 시)

용역명					
발주기관명		주관	()	공동	()
용역기간	(용역비용 : 천원)				
목표 및 필요성					
주요 내용					
활용계획					
용역기관 선정기준					

-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는 불인정 대상임.

(8) 국외출장 내역서 (해당 시)

출장명				
출장국가				
출장자 (참여인력에 한해 전원 기재)	성명	부서명	직급	출장시 수행내용
출장기간				
과제와의 연관성 및 필요성				
주요일정 (일자별 주요내용 간략 기재)				
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나. 2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다. 3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라. 4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4)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공동연구개발기관 :)

가. 1년차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 총액	참여 기간 (월)	참여율 (%)	합 계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예시)	책임	50,000	12	10	5,000		5,000	
		(예시)	선임	30,000	12	15	4,500		4,500	
	신규 인력	(예시)	연구원	25,000	9	50	9,375		9,375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연구지원인력										
	소 계									
합 계										

- 인건비 계상률은 10%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됨
- 내·외부 및 연구지원인력 구분
 - 내부 :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말하며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외부 :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프리랜서, 타교학생(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구분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고 외부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로 계상), 실습연구원 등
 - 연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 기준
 -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 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2)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단위 : 천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석통합과정	석·박통합과정	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현금)
박사후 과정	(예시)	3,000			
박사과정	(예시)	2,500			
석사과정	(예시)	1,800			
학사이하	(예시)	1,000			
총 액					

(3) 연구시설 장비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합 계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시설. 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 장비 임차비						
	연구시설. 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건축비 포함)						
합 계							

(4) 연구재료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현물)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5)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비 고
연구활동비					
합 계					

(6)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직접비의 xx%)				
합계				

※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계상비율과 총액만 기재 (세부내역 미기재)

(7) 용역 내역서 (해당 시)

용역명					
발주기관명		주관	()	공동	()
용역기간	(용역비용 : 천원)				
목표 및 필요성					
주요 내용					
활용계획					
용역기관 선정기준					

-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는 불인정 대상임.

(8) 국외출장 내역서 (해당 시)

출 장 명				
출 장 국 가				
출 장 자 (참여인력에 한해 전원 기재)	성명	부서명	직급	출장시 수행내용
출 장 기 간				
과제와의 연관성 및 필요성				
주요일정 (일자별 주요내용 간략 기재)				
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나. 2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다. 3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라. 4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붙임 1] 구축 시설·장비 개요 및 활용계획 (예시는 제출시 삭제)

시설 / 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처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임차()		구입구분	내자() 외자()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50,000,000원
예상수명		5년		예상 유지비용	20,000,000원/년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협의 후 결정()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처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da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활용빈도	연평균 가동률 60% [(24시간X50주) / (40시간X50주)] 이상			
	수요조사 결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및 직접조사 결과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PLS-1000	취득일시	2006
		관리부서	지식정보보안연구부	공동활용 가능여부	활용불가(), 제한적 활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작성 안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삭제) >

- 연구개발계획서에 적은 장비명과 일치하도록 장비명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된 전체연구개발기간 중 3천만원 이상 구축예정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 건별로 작성함(구입, 임차 모두)
- 상기 기자재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 장비관리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 필수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참조

[참고 1] 성과지표명 및 산식 (제출시 삭제)

구분	지표구분	지표명 (단위)	정의/산식/방법	
기반 구축 공통	필수	장비가동률 (%)	정의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장비의 가동률
			산식	$\sum (\text{총 시설장비 가동시간}) / \sum (\text{총 시설장비 가용시간}) \times 100 (\%)$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동시간 : 실질가동시간과 보조가동시간의 합 * 실질가동시간 : 시험, 분석, 계측, 교육, 생산 등을 위해 연구시설·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 * 보조가동시간 : 사용 전 장비 예열, 유지보수 작업, 사용 후 장치 청소/세척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가동한 시간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켜져 있는 시간 제외) 가용시간 : 근무일수 $\times$ 8시간 = 연 2,000시간 * 연간 근무일수 : [주5일 $\times$ 50주 = 250일]을 기준으로 함 측정대상 :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이 투입된 신규 구축 또는 성능개선(업그레이드) 시설장비 i-tube 시스템에 등록한 장비별 가동실적을 통해 가동률 산출
	필수	공동활용도	정의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장비당 공동활용기관 수
			산식	$\sum (\text{장비별 공동활용기관 수(중복제거)}) / \sum (\text{가동장비 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동장비별로 동일기업(기관)이 다수 이용한 경우에는 1건으로 산정 (장비별 중복 활용기관 제거, 장비간 중복은 인정) 측정대상 :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이 투입된 신규 구축 또는 성능개선(업그레이드) 시설장비 중복제거 후 공동활용도 산출 예시 * A장비 이용실적(a기업 4회, b기업 2회, c기업 1회) => 3개 기업 B장비 이용실적(a기업 3회, d기업 1회) => 2개 기업 C장비 이용실적(a기업 1회, e기업 1회) => 2개 기업 공동활용도 = (A장비 3 + B장비 2 + C장비 2) / 3 = 2.3 i-tube 시스템에 등록한 장비별 이용기업수를 통해 공동활용도 산출
	선택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정의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시설장비 투입 대비 구축된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을 지원한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비율
			산식	$\sum (\text{연간수익금 누적금액}) / \sum (\text{시설장비구축 투입 누적금액}) \times 100(\%)$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 공동활용, 시험평가·인증,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등 기술서비스 지원, 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 * 정부·지자체 등의 지원예산은 수익금에서 제외
	선택	수혜자 만족도 (점)	정의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을 지원한 활동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사업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한 만족도 점수
			산식	$\sum (\text{만족도 점수}) / \sum (\text{만족도 조사대상 수}) (\text{점})$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비 이용기업 또는 기술서비스 수혜기업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설계하되, 조사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수치화

구분	지표구분	지표명 (단위)	정의/산식/방법	
기술 서비스	필수 (3가지 중 2가지 이상 필수)	시험·평가 · 인증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인증 지원 건수
			산식	· Σ (시험·평가 결과서 및 공인된 인증서 발행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수혜기업의 제품기획·설계 - 시제품 - 완제품 - 고장분석·재설계 - 사업화 지원 단계에서 발생하는 전주기 기술지원을 포괄
		시제품 제작 지원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건수
			산식	· Σ (결과활용기관 제품의 양산 전 시제품 제작 지원 결과보고서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수혜기업의 제품기획·설계 - 시제품 - 완제품 - 고장분석·재설계 - 사업화 지원 단계에서 발생하는 전주기 기술지원을 포괄
		기술지도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지도(컨설팅) 건수
			산식	· Σ (결과활용기관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 컨설팅 실시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수혜기업의 제품기획·설계 - 시제품 - 완제품 - 고장분석·재설계 - 사업화 지원 단계에서 발생하는 전주기 기술지원을 포괄 · 1회성 질의에 대한 단순 응대는 기술자문에 해당하여 기술지도와 구분
	선택	서비스 도출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도출하고 i-tube에 등록한 건수
			산식	· Σ (i-tube 서비스 등록 건수)
			방법	· i-tube에 등록된 서비스(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활용한 서비스) 기준
수혜 기업 파급	선택	서비스 지원 (건)	정의	· i-tube 등록 서비스를 활용한 기업지원 건수
			산식	· Σ (i-tube 등록 서비스 활용 기업지원 건수)
			방법	· i-tube에 등록된 서비스(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활용한 기업지원 건수
	필수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원)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한 기여율을 반영한 매출액 실적
			산식	· Σ (수혜기업의 사업화 매출액 X 기여율)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기여율 반영 사업화 매출액 산출 예시 * A기업 제품 매출단가 50만원 x 100개 x 기여율 5% = 250만원 B기업 제품 매출단가 2,000만원 x 30개 x 기여율 1% = 600만원 사업화 매출액 = 250만원 + 600만원 = 850만원
	선택	수혜기업· 수행기관 신규고용 인원 (명)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한 기여율을 반영한 수혜기업 및 수행기관(주관·공동)의 신규 고용 인원
			산식	· Σ (수혜기업·수행기관의 신규고용 인원 X 기여율)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기여율 반영 신규고용 인원 산출 예시 * A기업 신규고용 인원 10명 x 기여율 10% = 1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고용 인원 4명 x 기여율 50% = 2명 신규고용 인원 = 1명 + 2명 = 3명

구분	지표구분	지표명 (단위)	정의/산식/방법	
기 본 구 축 공 통	선택	건축공정 진행률 (%)	정의	▸ 전용공간(기반구축센터) 건축공정 진행단계 달성률 (건축 해당시)
			산식	▸ 달성단계 / 총 진행단계 X 100 (%)
			방법	▸ 총 건축공정 진행단계 (총13단계) * ①부지선정 및 인허가 획득→②토지매입→③건축사 선정→④계획설계(법규 검토, 기본계획 도면작성)→⑤실시설계(세부재료, 디자인, 세부도면 등)→⑥건축허가→⑦시공사선정→⑧착공신고 및 착공→⑨공사시행→⑩감리→⑪사용승인신청→⑫건축물등기→⑬준공 ▸ 산식 예시 * 실시설계까지 진행된 경우 : 5단계 / 13단계 = 38% ▸ 과제별 추진환경에 따라 일부 절차는 바뀔 수 있음
	선택	장비구축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완료 건수 (건)
			산식	▸ ∑ (시설장비구축 완료 건수) (건)
			방법	▸ 하기 장비구축 과정을 모두 완료한 건수를 의미 * 수요조사→장비선정→내부 장비심의위→중앙장비심의위→구매의뢰→구매계약→통관, 운송, 입고→검수 및 설치 * 구매단가 및 과제별 추진환경에 따라 일부 절차는 바뀔 수 있음
기 술 서 비 스	선택	시험평가법 개발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평가법을 개발한 건수
			산식	▸ ∑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건)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시험평가법개발보고서(SOP 포함) 건수를 기준으로 함
	선택	인증 지원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 제품에 대해 인증 절차를 대행하거나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건수
			산식	▸ ∑ (인증 지원 건수) (건)
			방법	▸ 타 국내·국외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 절차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본 사업 과제에서 지원한 건수를 의미
	선택	고장분석· 재설계 지원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 제품에 대해 고장분석·재설계를 지원한 건수
			산식	▸ ∑ (고장분석·재설계 지원 건수) (건)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선택	공인인증 체계 구축건수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 관련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공인 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타 국내·외 기관에서 인정기관 지위를 확보한 건수
			산식	▸ ∑ (인증항목 확보 건수)
			방법	▸ 실증 인프라 및 표준 시험 기법을 활용한 시험 결과를 KOLAS, 선급, 이에 준하는 시험기관으로 공인시험/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정 기관 자격 획득/유지 ▸ 상호인정협정(MRA)도 인정(1단계시험성적서 상호인정, 2단계인증서 상호 인증)
	선택	표준 제안건수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외 표준관련 기관에 신규작업표준안(PWI) 이상의 표준관련 제안 건수
			산식	▸ ∑ (표준제안 건수)
			방법	▸ ISO 등 국제표준, 국가표준, 산업표준 등 표준화제안

구분	지표 구분	지표명 (단위)	정의/산식/방법	
기술· 제품 사업 화 지원	선택	실증 지원 건수 (건)	정의	· 연구개발기관(사업 수행기관)이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행과정에서 확보한 성과로서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실증 평가를 지원한 건수
			산식	· Σ (실증 지원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소재, 공정, 제품 등에 대한 신뢰성, 유효성, 안전성, 독성 평가 등 실증 지원 건수
	선택	기술이전 (건)	정의	· 연구개발기관(사업 수행기관)이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행과정에서 확보한 성과에 대해 수요기업과 기술실시 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건수
			산식	· Σ (특허, 노하우 등 기술이전 계약 체결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계약서 체결 건수를 기준으로 함
	선택	기술·제품 정보 DB 제공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에게 기술·제품 정보를 제공한 건수
			산식	· Σ (기술·제품 정보 DB 제공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단순 웹페이지 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집적화된 DB를 결과활용 기관이 활용한 건수를 의미
	선택	기술·제품 판로개척 지원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국내·외 제품 판로를 개척 지원 성공한 건수
			산식	· Σ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성공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단순 상담회 개최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최 결과 신규 판로 개척까지 연결되는 지원을 의미
수혜 기업 파급	선택	네트워크 운영 건수 또는 참가자 수 (건, 명)	정의	·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포럼·세미나 등 네트워크 운영 건수 또는 교육·포럼·세미나 등 참가자 인원 수
			산식	· Σ (교육·포럼·세미나·전시회·상담회 등 운영 건수) · Σ (교육·포럼·세미나·전시회·상담회 등 참가자 인원 수)
			방법	· 운영 건수(input)보다 참가자 인원수(output)가 중요 · 과제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등 상시 성격의 회의는 제외 · 사업 수행기관이 주관한 운영 건수 / 참가자 인원 수를 의미하며, 외부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단순 참여는 실적이 아님에 유의
	선택	수혜기업 신제품 개발 또는 상용화 성공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한 결과 수혜기업이 신제품 개발 또는 상용화에 성공한 건수
			산식	· Σ (수혜기업의 신제품 개발 성공 건수) · Σ (수혜기업의 상용화 성공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사업 수행기관의 기술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구분	지표 구분	지표명 (단위)	정의/산식/방법	
	선택	수혜기업 지재권 출원 또는 등록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한 결과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이 특허·지재권 등록에 출원 또는 등록에 성공한 결과 건수
			산식	▸ $\sum$ (수혜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 $\sum$ (수혜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사업 수행기관의 지재권 출원·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선택	수혜기업의 선진국 제품 국산화 성공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이 선진국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결과 건수
			산식	▸ $\sum$ (수혜기업의 선진국 제품 국산화 성공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선택	글로벌 협력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이 해외 기관·기업과 글로벌 협력(MOU 체결 등)에 성공한 건수
			산식	▸ $\sum$ (글로벌 협력 건수)
			방법	▸ 사업 수행기관이 수혜기업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와 체결하는 MOU 등을 의미함
기타	자율	자율 지표명 (단위)	정의	▸ 상기 지표 이외에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지표 설정 가능
			산식	▸ 자율 산식
			방법	▸ 자율 설명

[참고 2]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 (제출시 삭제)

- 단계정산을 실시함에 따라 상시점검수수료 및 정산수수료를 책정된 기준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 책정 (단, 단년도 과제는 예외)

- 연차별 상시점검 수수료 : 현 정산수수료의 85% 수준 적용

* 상시점검 정의에 따른 분기별 상시점검 추진 및 상시점검 보고서 제출

- 정산수수료 : 매 연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정산수수료의 15%씩 가산하여 책정

(예시) 3년 일괄정산과제의 경우 : 매년 <정산수수료 표준액> 기준 정산수수료 산정

구분	상시점검수수료	정산수수료	연차가산	비고
1차년도	○	X	X	정산수수료의 85%
2차년도	○	X	X	정산수수료의 85%
3차년도 (최종)	X	○	○	3차년 정산수수료 + 1차년 정산수수료 15% + 2차년 정산수수료 15%

○ 정산수수료 표준액

구 분(연구개발비 규모*)	단가(천원)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연구개발비 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예: 지방비)의 합(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공동연구개발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정산수수료 산출 예시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없을 경우 : 1,185,00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1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1(10%가산)=1,303,50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2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15(15%가산)=1,362,75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3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20(20%가산)=1,422,000원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연구소(홍길동), ○○대학(김영수)		

위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나머지 각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대표하여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 법인기관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 별 날장 제출도 가능함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6.04.01 ~ 종료일 기입(예, 2026.12.3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
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
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
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
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
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
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 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참여연구자 정보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²⁾	국가연구자번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자필서명)
○○○ ¹⁾					

☐ 연구근접지원인력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²⁾	국가연구자번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자필서명)
○○○ ¹⁾					

연구개발기관 동의란

연구개발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기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기재
- 2)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 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 3) 전체 인건비계상률에는 연구개발과제가 선정 될 경우, 연구개발시작일 기준으로 본 과제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계상률을 기재하여야 함
-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6.04.01 ~ 종료일 기입(예, 2026.12.31.)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고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 작성자 정보

소속기관	성명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연구윤리, 청령 및 보안서약서 동의 (자필서명)
○○○ ¹⁾				

년 월 일

한 국 산 업 기 술 진 흥 원 장 귀하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와 연구근접
지원인력도 포함하여 기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기재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6.04.01. ~ 2000.00.00		

본 사업의 신청(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납입 및 현물 부담(확약)

(단위 : 천원)

년 차 항 목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계
현 금					
현 물					
계					

2. 연차별 현물 부담금액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시설· 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재료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활동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간접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계						

* 별첨 : 현물납입 내역 관련 증빙서류

2026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인)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납입확약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6.04.01 ~ 2000.00.00		

본 사업의 신청(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납입 및 현물 부담(확약)

(단위 : 천원)

년 차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계
현 금					
현 물					
계					

2. 연차별 현물 부담금액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시설· 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재료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활동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간접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계						

2026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대 표)

(인)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연구개발기관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 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26.04.01 ~	소속 연구개발기관	

검토 내용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인건비 계상률 초과, 최소 인건비 계상률 등 준수 여부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는가?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최소 참여 인건비계상률은 10%를 충족하지 못하는가?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신청기관과 상이한가?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제출일자 : 2026 . . .

연구개발기관명 : (인)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 (인)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